

선	기관장
람	

시 G 보

제40호 2023. 10. 4.(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30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45호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3
광양시 조례 제2046호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광양시 조례 제2047호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광양시 조례 제2048호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광양시 조례 제2049호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25
광양시 조례 제2050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광양시 조례 제2051호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광양시 조례 제2052호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0
광양시 조례 제2053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광양시 조례 제2054호	광양시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광양시 조례 제2055호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광양시 조례 제2056호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61
광양시 조례 제2057호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광양시 조례 제2058호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광양시 조례 제2059호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광양시 조례 제2060호	광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광양시 조례 제2061호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9
광양시 조례 제2062호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광양시 조례 제2063호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111
광양시 조례 제2064호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광양시 조례 제2065호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122
광양시 조례 제2066호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132
광양시 조례 제2067호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37
광양시 조례 제2068호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광양시 조례 제2069호	광양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146
광양시 조례 제2070호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150
광양시 조례 제2071호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154
광양시 조례 제2072호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장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광양시 조례 제2073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21호	광양시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	172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4.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1길 22(광영동)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0.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84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1길 22 (광영동)	20231004	20200603	사업명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979, 산 164-10, 산175-7	전라남도 광양시 장길로 116 (황금동)	20231004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5호

붙 임 :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비용부담)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원 표지판의 설치
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된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6호

붙 임 :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율적 수행과”를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정책의”를 ““정책용역”이란 정책의”로, “정책용역사업”을 “용역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위의 용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모든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천재지변”을 “재해”로 한다.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구용역 관리 원칙)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4조제4호 중 “추진을”을 “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수행”을 “심의·의결을 수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공개하여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u>효율적 수 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품질과 활 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 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 · 체계적</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 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 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u>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 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 책용역사업</u> 나. <u>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 발 · 개선과 학술적인 조사 · 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 역사업</u>	제2조(정의) ----- -----. 1. ----- ----- ----- ----- -----. 가. “ <u>정책용역</u> ”이란 <u>정책의</u> - ----- ----- <u>용역사업을 말한다.</u> 나. “ <u>학술용역</u> ”이란 학문분야 <u>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 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 역으로서 시정 정책개발이 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u>

다.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신 설>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사업을 말한다.

<삭 제>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신 설>

2.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
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
는 모든 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
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신 설>

2. ~ 4. (생 략)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
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
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 설>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규정
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
역사업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위의 용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
른 모든 용역사업을 말한다.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

<삭 제>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
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5. ----- 재해 -----

제3조의2(연구용역 관리 원칙) 연

	<u>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u> <u>1. 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u> <u>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u> <u>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u>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용역의 <u>추진</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u>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u>위촉한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u>

1. ~ 3.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u>심의</u>에서 제척된다. 1. 2.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u>심의를</u>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① (생 략) 제16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2. (생 략)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 보고서 및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u>않도록 하여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④ ----- ----- ---. <u>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u>심의·의결</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심의·의결을 수행</u>----- -----. 제12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2. (현행과 같음) ③ ----- ----- -----
---	--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 또한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
----. <단서 삭제>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신 설>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7호

붙임 :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제5조제3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술사 등)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u>건설기술용역</u>: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u>건설기술용역</u> 다. (생략) 3.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건설공사 및 <u>건설기술용역</u>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기술사 등) 3. (생략) ④ (생략) 제14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관련 <u>업무담당</u>이 된다. ②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u>건설엔지니어링</u>: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u>건설엔지니어링</u>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건설엔지니어링</u> —————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간사) ① ————— — <u>업무팀장</u> —————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8호

붙임 :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보형식) 광양시 시보(이하 “시보”라고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시보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한다.

② 시보는 필요한 경우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한 사항
4. 기타란 : 광양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자료제출) 시 실·단·과장, 읍·면·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시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9호

붙임 :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광양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선샤인 광양”(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발행)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 및 제작)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보통신 활용) ①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자료를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보상)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0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같은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항 중 “1일”을 “2일”로 한다.

- ⑧ 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미 실시자에 한하여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 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생략) <신 설> 1. ~ 4. (생략) ⑧ 시장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공무원에게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⑧ 시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

현행	개정안
<u>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u>1일</u>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 ⑪ (생략)	<u>교육 미 실시자에 한하여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u> ⑨ ----- ----- ----- <u>2일</u> ----- -----. ⑩ · ⑪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1호

붙 임 :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동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무

번 호	위 임 사 무	근 거 및 적 용 른
1	6급상당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 법 제6조 제2항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전반	"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 임 기 관
총 무	1.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 면 동 장
세 무	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지방재정법」 제62조	읍 면 동 장
회 계	1.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제70조	읍 면 동 장
	2.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지방재정법」 제70조	읍 면 동 장
	3.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청사 신축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읍 면 동 장
	4. 불용품 매각 처리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제18조	읍 면 동 장
민원지적	1.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읍 면 동 장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읍 면 동 장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읍 면 동 장
사회복지	1. 의료 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의료급여법」 제8조	읍 면 동 장
	2. 행여사망자 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읍 면 동 장
	3. 매장·개장신고의 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 면 동 장
	4.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읍 면 동 장
	5. 제3호 내지 제5호의 신고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읍 면 동 장

분야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 임 기 관
농림수산	1. 3,300㎡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권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물의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36조	읍 면 장
	2.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 -농업인주택, 농업시설, 농수산유통 및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35조	읍 면 장
	3. 농지원부 발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50조	읍 면 동 장
	4. 입산신고 및 허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읍 면 동 장
건 설	1. 접도구역 관리(고속도로 제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도로법」 제20조 및 제49조	읍 면 동 장
건 축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위반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 등 행정지도, 보고사항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읍 면 동 장
재난안전	1.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 사용 등 권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제39조	읍 면 동 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임사항) ① <u>광양시장</u> 이 <u>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u> <u>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u> <u>같다.</u> ② (생략)		제2조(위임사항) ①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u>의회사무국에 위임하는 사무</u>		[별표 1] <u><삭 제></u>
변 호	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법률
1	6급상당이하 일반직지방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 법 제6 조제2항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 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전반	"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현행				개정안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			
분야별	위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수임기관				
총무	1.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동장				
세무	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지방재정법」 제62조	읍면동장				
회계	1. 배경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제70조	읍면동장				
	2.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지방재정법」 제70조	읍면동장				
	3.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청사 신축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읍면동장				
	4. 불용품 매각 처리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제18조	읍면동장				
민원지적	1.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읍면동장				
민원지적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읍면동장				
	<신설>	<신설>	<신설>				
사회복지	1. 의료 급여증 제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의료급여법」 제8조	읍면동장				
	2. 행여사망자 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읍면동장				
	3. 매장·개장신고의 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읍면동장				
	4.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읍면동장				
	5. 제3호 내지 제5호의 신고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읍면동장				
농림수산	1. 3,300㎡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권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36조	읍면장				
	2.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 -농업인주택, 농업시설, 농수산유통 및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35조	읍면장				
	3. 농지원부 발급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농지법」 제50조	읍면동장				
	4. 임산신고 및 허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읍면동장				
건설	1. 점도구역 관리(고속도로 제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도로법」 제20조 및 제49조	읍면동장				
건축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위반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 등 행정지도, 보고사항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읍면동장				
재난안전	1.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 사용 등 권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제39조	읍면동장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2호

붙임 :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3호

붙임 :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① ~ ③ (생 략)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4호

붙임 :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출자·출연기관, 위탁시설 포함)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로컬푸드 직영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2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연매출액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를 “법 제7조제5항에”로 하고, 제8조제2호 중 “한 자”을 “한 사업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보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한 자” 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가맹점에 대하여도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제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연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 ----- 하는 사람은----- -----

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에 있으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출자·출연기관, 위탁시설 포함)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 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로컬푸드 직영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가맹점의 자격 요건) 법 제7
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
여야 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연매출액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
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가맹점의 자격 요건) 법 제7
조제5항에-----
-----.

1. (현행과 같음)

2.-----
----- 한 사업자 -----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
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3항
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
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제10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① (생략)

② (생략)

1. 상품권 할인(캐시백)판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이내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금액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할인 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③ (생략)

<신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보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가 맹점을 <u>신고한</u>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내 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 가 아닌 경우나 신고자와 위반한 가맹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생 략)	----- ----- <u>신고한</u> <u>사람</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5호

붙 임 :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원 6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의3(중전의 제2조의2)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 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
제2조(구성) ①광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 ----- -- 10명 ----- --.
②위원장은 <u>광양시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 <u>광양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u>업무담당 과장</u> 으로 한다.
③위원은 <u>광양시의회 의장</u> 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광양시 지명 관련 업무담당 <u>국장</u>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3명 이내로 구성하되, <u>광양시장</u> 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u>광양시의회에서</u> 추천하는 ----- ----- <u>과장</u> , ----- ----- <u>사람</u> 및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위원 6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u> -----, <u>시장</u> ----- -----.

현행	개정안
<u>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삭 제></u>
<u><신 설></u>	<u>제2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2조의2(위원의 해촉) 광양시장</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u>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② (생략)	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u> <u>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u>	<u>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u> <u>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u>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6호

붙 임 :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
4. 국제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영상 문화예술 및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8.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시책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문화예술 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예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수립
2. 제6조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3. 문화예술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문화진흥기금

제1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
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1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운용기금은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로 한다.

③ 기금은 지정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재단 등을 설립하여 위탁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중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양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광양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7호

붙 임 :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3조(책무) ① (생 략) 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8호

붙 임 :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 (생략) ③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 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고에 예 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 <u>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 례</u> 」 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시장 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업무담당주사</u> ② (생략)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u>업무담당팀장</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 <u>광양시 재무 회계 규칙</u> 」과 「 <u>광양시 기금 관리 기본 조례</u> 」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u>광양시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u>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59호

붙 임 :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

4.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제12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생 략) 1. (생 략)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생 략) 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 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 동차 5. (생 략)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 품 3.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 -----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훈련) ① (생 략) ②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 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법」에----- -----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0호

붙 임 : 광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경관조례”를 “광양시 경관 조례”로 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야간경관 설치 및 관리계획

제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조제3항과 제4항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제10조제8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광양시 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제7장 보칙(제32조)을 삭제한다.

제7장(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도시경관의 개선

제32조(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관계획은 광양시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의 시설물
2.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3. 공원 및 휴양시설
4. 교량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도로 난간 등
5.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④ 시장은 별표 1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별표 2의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시설물 중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시범지역 지정 등)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야간경관 등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시범지역 지정, 지역별·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야간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도시경관의 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역 경관의 변천사를 역사적 기초자료로 보존하여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경관의 기록·보존은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기록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아이디어 공모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자원 및 경관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제36조 및 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적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 경관조례</u>	<u>광양시 경관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대규모 행위"란 무게 100톤 또는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의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u>다른</u> ----- ----- ----- --.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법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 설></u>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야간경관 설치 및 관리계획</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 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업의 대상 등)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32조제3항과 제4항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5.·6. (생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0조(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 ⑦ (생략)	제10조(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⑧ ----- ----- ----- 팀장이 --.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④ ----- ----- ----- --.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생략)

2. 광양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⑤ ~ ⑦ (생략)

제7장 보칙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광양시의회에서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7장 도시경관의 개선

제32조(야간경관의 증진) ① 시장은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야간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경
관계획은 광양시 경관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야간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경관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경관 관리의 분야·권역별

<신 설>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3. 그 밖에 야간경관 향상 및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조형물 등의 시설물

2.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3. 공원 및 휴양시설

4. 교량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도로 난간 등

5.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설물

④ 시장은 별표 1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별표 2의 경관위원
회 자문대상 시설물 중 공공시
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
이 아닌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
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시범지역 지정 등) 시
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야간경관 등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시범지역 지정, 지

<신 설>

<신 설>

역별·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야
관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
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도시경관의 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역 경관의 변천사
를 역사적 기초자료로 보존하여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도시경관의 기록·보존은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
례」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기록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5조(아이디어 공모 등) ① 시

장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자
원 및 경관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1호

붙 임 :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 재창조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의 명칭, 목적, 구성, 운영, 존립과 해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해촉)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거

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별 협의회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1. 지역 내 주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해당 지역의 광양시의회 의원
5. 공무원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 위원의 해촉은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4조(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9조(지원 금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31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마을관리사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3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학습·휴게공간,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도

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5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한 정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2호

붙 임 :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수정안의 별표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택시운송사업자</u> 및 <u>택시운수종사자</u>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택시운송사업</u>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u>택시운송사업</u>의 발전을 위하여 <u>운송사업자</u> 및 <u>운수종사자</u>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택시운송사업자</u> -----. 제4조(재정지원) ----- ----- ----- ----- ----- 범위 ----- ----- -----. 1. ~ 6. (생략)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에 따라 <u>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u>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u>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u>이 만료되기 전 2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u> <u>제8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연장요건

차종	사 업 의 구 분		기 본 차 령	연장가능 차 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5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8년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3호

붙임 :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6조(이용 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시장은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4호

붙 임 :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을 “(지원사업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
2. 지원기준, 지원대상의 선정(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가점·감점 기준, 지원 제외대상
4. 보조금 교부와 사업비의 정산 및 사후 평가

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계획수립)”을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결과 및 추진계획을”을 “결과를 선정된”으로, “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을 “사람에게 통보하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자는 사업 선정 및 완료”를 “신청한 사람은 사업 선정”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삭 제 6.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생 략) 제3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단지안의 주민공동시설에 한한다) 가. ~ 바. (생 략)	제2조(정의) ----- -----.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특
별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해야 하
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및
방수 등 주거전용 부분에 대해
서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20
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③ · ④ (생략)

<신 설>

사. _____
「도서관법」 제4조제2항
제1호-----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
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선정 및 완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사업 선정 및 완료 결과를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차

2. 지원기준, 지원대상의 선정(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가점·감점 기준, 지원 제외 대상
4. 보조금 교부와 사업비의 정산 및 사후 평가
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등)

① -----
----- 결과를 선정된 -----
----- 사람에게 통보
하고 -----
-----.
---, 신청한 사람은 사업 선정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안전관리 업무 대상) 제17

조에 따른 업무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시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5호

붙 임 :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광양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보수
2. 상·하수도 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건축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별표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량평가를 하며, 가점·감점과 제외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효과

성, 시설의 위험성·노후화 정도 등을 정성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선정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 선정 결과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정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장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주체로부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안전관리 업무 대상) 제16조에 따른 업무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제19조(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및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신 청 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 대 수		관리단회의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계	보 조 액	자부담액
계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광양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도면 등) 1부 4.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	성 명 (대표자)	(☎:)		
	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계	보 조 액	자부담액	잔 액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광양시장 귀 하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장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6호

붙임 :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선적립금”이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 부과 및 적립에 관한 교육
3.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

경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조사)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7호

붙 임 :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8호

붙 임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u>제외한다</u>)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u>포함한다</u> ----- ----- ----- <u>5년</u> -----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u>2년</u> 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5년</u>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69호

붙임 : 광양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관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이 맨발걷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 산책로를 계획하거나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건강 증진 체험사례 발굴과 전파
4. 맨발걷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맨발 산책로 안내
5. 맨발걷기와 관련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산책로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맨발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가 시민의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시민 참여 등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0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4조(운영계획)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목표와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광양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청소년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3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장과 광양 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청소년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종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의회 표창규정」을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내용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1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를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로 한다.

별표의 비위의 정도란 중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2항 위반)”을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5항,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8. 18.>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제43조제5항,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 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권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광양시의회 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분 거 구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 상공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교육 ☐ , 전문직 ☐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일 일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광양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양시의회 의원 (인) 광양시의회 의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 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 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 조----- -----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2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로,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를 “정원 및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을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소속 위원회”로,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이외”를 “사무 이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양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광양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따로”를 “따로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u>	<u>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u>의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은 <u>의장</u>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생략)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u>소속직원</u>을 지휘·감독한다.	제1조(목적) ----- ----- 제102조부터 제10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 ----- ----- - <u>정원 및 사무분장</u> ----- ----- ----- -.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u>광양시</u> <u>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u> -- ----- -----. ②----- <u>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제3조(사무국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속 직원</u>-----.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광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광양시의회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

----- 위원회의 사무-----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
√ 이외-----

-----.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u>관련 자료 취합 · 분석 지원</u> 5. <u>의원의 공청회 ·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u> 6. <u>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u> <u><신 설></u>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u>사무 이외에</u>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u>직원의 정원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u>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u>사무분장은 따로</u> 규칙으로 정한다. ① · ② (생략)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u>사적인 사무를</u> 지시할 수 없다. ④ ----- <u>소관 사무에 대하여는</u>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u>그 외</u> ----- -----. 제6조(직원의 정원) ① ----- ----- <u>「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 제7조(시행규칙) ----- ----- ----- <u>따로 의회</u> -----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73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1일”을 “2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⑧ 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미실시자에 한하여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전 1개

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별표 3의 출산란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에는 1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4. (생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⑧ 의장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u>명예퇴직할 공무원에게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u>1일</u>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 ⑪ (생략)	⑧ 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u>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미 실시자에 한하여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다만, 퇴직 준비 휴가 사용 시작일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u> ⑨ ----- ----- ---- <u>2일</u>----- -----. ⑩ · ⑪ (현행과 같음)
---	---

**광양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4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1호

붙 임 : 광양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

광양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광양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